Vol. 93 April 2016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6

"변호사단체가 잘 해야 변호사 위상 올라가"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ISSN 1976-488X 정가 11,000원

(주)리걸타임즈

표지인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카드 마일리지 소송' 승소 황선기 변호사

'시세조종 vs 위험회피' ELS 판결 집중분석

구동균 변호사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NPL 정리

2015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비율은 1.71%로 2014년 말 대비 0.16% 상승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28.5조원으로 2014년 말 대비 4.3조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이 26.4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92.6%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업(12.92%), 건설업(4.35%) 등 취약 업종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부실채권 정리 감소

반면 2015년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2014년 대비 2.8조원 감소했다. 이러한 정리는 대손상각(7.5조원), 매각(5.3조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5.2조원), 여신정상화(3.5조원), 기타(0.8조원)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근래 부실채권 거래시장에는 유암코, 대신F&I, SBI저축은행, 유진자산운용, 마이애셋자산운용, 외환F&I 등이 투자자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래의 부실채권 거래시장은 주로 일반담보부채권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형성되어 왔다. 개인에 대한 채권은 물론이고 기업에 대한 채권에 있어서도 주로 부실기업과는 별개로 '부실채권의 처리'에만 중점을 둔 것이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나 재매각을 통한 목표 수익률 달성만을 목적으로 삼을 뿐이다.

하지만 거래시장이 아예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장래에 여신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의 경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가 부실채권과 기업구조조정이 만나는 지점이고, 이때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출자전환, 채무재조정 등 규정

이러한 구조조정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법령이 바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다. 동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출자전환, 채무재조정, 신규신용공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들이 속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 마련되었고, 이 협약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워크아웃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최초로 제정되게 된 것이다.

2001년 최초 제정

그 이후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시법으로서 세 차례 더 제정되었고, 그때그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부 내용의 변경을 거듭하였다. 4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자 그 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

고자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마련되었고, 2016년 3월 18일자로 5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되었다. 동법은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채권자도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였고,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관리절차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은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찬성으로 하되, 단일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액이 총 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도 필요한 것으로 하는 등 많은 내용을 변경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즉 시장성차입(회사채, CP)의 증가로 채권은행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일부 채권은행들은 추가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채권단 간 이견으로 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하고,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활용 유암코 선제적 구조조정 통한 한국 경제 조속한 회복 기대"

유암코가 민간 구조조정 주도

그런데 은행들이 출연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이미 '부동산PF 정상화 뱅크'(기업재무안정PEF 및 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 부동산PF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건설사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다. 결국 은행들의 건의에 따라 유암코(기업구조조정본부)에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되었다. 유암코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에서는 유암코가 기업재무안정PEF를 통해 채권 · 주식 등을 매입하여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유암코가 단독으로 GP가 되거나 유암코와 민간이 공동 GP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전문적 · 독립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추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부실채권 대상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과 유암코(기업구조조정본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으로 양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진행하는 방안, PEF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이러한 PEF에 LP로서 참여하는 방안, 단순히 PEF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되 LP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암코 PEF에 NPL 매각 등 고려

이때 채권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각대금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상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와 채권은행의 수익 극대화를 모두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채권은행은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유암코 PEF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LP 참여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극적 활용과 유암코를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구동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